

# 사단법인 생명의식탁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생명의식탁'(이하, '본회')이라고 칭하고, 영문으로는 'Table for Life'라고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해외에서 기아와 빈곤,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또한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주어 함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외 빈곤 가정과 아동, 여성에 대한 기초 교육 사업
2. 해외 빈곤 가정의 생활 개선 및 직업 훈련 사업
3. 해외 빈곤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4. 해외 교육 및 직업훈련센터 건립 및 운영과 지원 사업
5. 자원봉사단 훈련 및 파견 사업
6.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7.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후원사업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제6조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한 자로 본회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준회원: 후원 회원으로서 후원금을 납부하는 자로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3. 특별회원: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 및 단체로 그 종류와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입회 및 탈퇴)

1. 본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본회의 탈퇴는 탈퇴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회비 운영) 본회는 회비를 본회의 목적사업과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제8조(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을 갖는다.
2.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3.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의무) 본회 정회원에게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칙을 지켜야 하다.
2.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과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3. 결의사항 및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징계) 본회의 회원이 다음의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제명, 또는 견책을 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때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상임이사 1인
4. 이사(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
5.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1.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총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실무를 책임지며 업무분담과 역할에 관해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서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5조(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6조(해임의 상정) 다음에 해당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총회에 상정한다.

1. 이사, 감사로서 그 책무를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2. 부정행위 등으로 본회의 운영과 재정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었을 때

### 제4장 총회

####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1~2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한 때와 이사회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4. 이사장은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7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보고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2.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
3.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6. 총회는 제17조 4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출석 회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 회의록)

1.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점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5장 이사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3. 정기이사회는 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5.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일시, 장소, 안전 등을 명시하여 회의 7일 전까지 이 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
3. 사업 및 재정의 집행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에 의해 이사회 권한으로 된 사항
7. 회원 승인 및 제명의 의결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9. 법인 해산에 관한 심의
10. 기타 주요사항
11. 이사회는 제22조 6항의 통지 안전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 하여는 이를 서면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회의록)

1.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점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장 조직 및 사무부서

### 제27조(고문,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1.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위원의 위촉과 그 활동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28조(사무조직 및 운영)

1.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상임이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업부서 및 실무기구 등의 직제 설치와 인사, 복무, 사무처리 등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29조(지부, 위원회, 연구소 등 조직)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의 지부 및 위원회, 연구소 등을 조직할 수 있다.



##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및 동산으로 한다.

### 제31조(수익금)

1. 본회의 수익금은 후원금,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편성)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4조(결산) 본회의 사업 결과와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제8장 보칙

제35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7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총회의 서면결의) 긴급을 요할 때의 총회는 서면이나 이메일,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9조(규칙 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칙 제정은 이사회가 결의한다.



## 제9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본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8년 1월 11일

발기인(대표)	채수일	(인)	발기인	김성철	(인)
발기인	김형기	(인)	발기인	김희선	(인)
발기인	권오성	(인)	발기인	윤기호	(인)
발기인	조항철	(인)			